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12
----------	-----

2024. 9. 12.
도시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8. 23. / 이진환 의원 등 10명
나. 회부일자 : 2024. 8. 2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4. 9. 1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을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주차장 공간을 제공하며 부설주차장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공 부설주차장 주차권 발행 및 월 정기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2, 제25조3)
- 공공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6조)
-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7조)
- 공공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을 규정함. (안 제29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별표1)
-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별표1의2)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서진원)

- 본 조례안은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공공 부설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5조의2와 3을 신설하여 공공 부설주차장 월정기 주차권 발행 대상 및 환불규정을 신설하였고, 월정기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6조에는 공공부설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을 현실과 맞게 재규정하였고, 안 제27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방치 자동차에 대한 안내와 주차행위 제한 등의 조치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관련 별표1의 주차요금 감면란에 긴급자동차를 전액 면제하고 부호로 정렬하였으며, 공공 부설주차장 요금표 별표1의2에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공공 부설주차장 1일 주차 요금을 같게 하였습니다.

- 금번 개정을 통해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요금 부과의 통일성을 기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붙임 :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